

의안번호	2216634
의 퇴 인	김종민의원
회 답 일	2026. 2. 11.
추계번호	26B070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청회 외에도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지역주민 토론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수렴된 의견은 감축정책 수립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며, 국회에 감축목표 및 감축수단을 보고하고 동의를 받을 때 그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제6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가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 시 공청회 외에도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지역주민 토론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지역주민 토론회 등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설정·변경 시 공청회 외에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다른 방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개정안이 시행되어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지역주민 토론회 등이 시행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참고로,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권역별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한 정책제안을 제시한 국민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포상을 수여하는 등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표 1] 국민참여 및 정책토론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세부사업(코드) -내역사업명	사업개요	2026년 예산
행정 안전부	행정생산성향상지원 (1933-300)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있는 행정제도 발굴 및 개선 추진, 우수사례 공유·확 산	236
	-국민체감형 행정제도 개선		90
	▶과제발굴 토론회 및 설명회	권역별 과제발굴을 위한 토론회 및 설 명회 개최	14
	▶우수사례 발굴전파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포상 및 홍보	49.4
국민권익 위원회	국민소통시스템구축 및 운영 (1132-321)	·모든 행정기관(중앙·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제안, 토론 및 각종 신고 등 소통창구를 통 합·연계한 범정부 온라인 국민참여 포 털‘국민 신문고 ¹⁾ ’운영 및 기능개선	3,895
	-국민소통시스템 운영	·국민신문고 내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 폼 “국민생각함”을 운영하여 일상생활 과 관련 있는 공공의제에 대한 국민, 공 공기관 및 전문가 간 의견 교류	3,406

주: 1)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각 부처에서 운영하던 온라인 정책토론을 국민신문고 플랫폼
으로 통합 운영

자료: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지역주민 토론회 등 구체적인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해당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nabo.go.kr